

제2107호

구 보

2023. 8. 31.(목)

제2107호

2023. 8. 31.

발행인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박강수

편집인 : 홍보미디어과 송인수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 화 : 02-3153-8262

<http://www.mapo.go.kr>

선	기관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행정예고]

-제2023-131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고 시

-제2023-158호: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공 고

-제2023-1308호: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마 포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31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비공무원 채용 기준, 절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 등 채용과 관련된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1조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채용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채용점검위원회, 채용공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서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제정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shv77@mapo.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행정지원과

3) 팩스: 02-3153-8249

라. 문의사항: 마포구청 행정지원과(02-3153-821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울특별시 마포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그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 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직속기관의 채용 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령, 내부 규정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반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란 마포구청을 말한다.
3. “직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5.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 제4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4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7.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8.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채용 협의, 복무 관련 지도·점검 등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은 주무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1.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그 직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적용한다.

제2장 채용 관련 심의회

제4조 (채용 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공무원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계획을 사전 심사한 경우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심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전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심의회 위원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또는 직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원활한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의 인사·복무를 총괄하는 인사 담당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6조(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① 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따른 심의 위원에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노동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채용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 위원장의 결정 또는 심의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회 간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회 의결로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이를 보관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지역, 학력, 연령 등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제한 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직급별 응시자격은 응시 자격 기준표(별지 제6호서식)를 따르며, 별지 제6호서식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의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보훈 특별 고용 등 관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 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채용 과정에서 편견을 유발하는 사항을 배제하고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의 다양화 및 직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기·면접시험의 도입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근로자 채용 시기, 채용 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 관련 중요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채용 관련 문서를 기관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기관에 채용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험일 전에 채용 관련 문서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내부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별도 규정(훈령, 예규, 조례, 시행규칙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 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5. 면접전형

② 채용권자는 인성·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는 채용계획 수립 시 행정지원과장과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는 채용 전형별 평정 기준, 시기, 규모, 자격, 조건, (예비)합격자 결정, 동점자 처리기준, 우대 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 계획은 제4조의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직속기관의 하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채용담당부서가 직접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직속기관의 하부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하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야 한다.

제13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권자는 구청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제1항부터 제2항의 공고 절차 따라 7일 이상 공고하되,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에 따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6개월 이하로 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직속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운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4조(채용절차의 심사위원 선정) ① 채용권자는 채용 절차의 심사 위원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 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채용절차의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채용 절차의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1. 응시자와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관계 및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거나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 실시 기관의 장 및 채용 부서장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 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호를 받아야 하며, 심사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용부서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해당 응시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 시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한 채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에게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자의 채용 심사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원서접수) ① 근로자 채용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기타 채용공고 시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용 자료로 요구할 수 없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7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류심사 채점표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8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직위에 필요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채용계획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등의 방법은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③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2항을 포함하여 면접시험 유의 사항을 사전 교육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권자는 각 전형 단계별로 응시자에게 가점기준(별지 제14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한다.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은 제12조제2항의 채용 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2조 제2항의 채용 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 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합격예정자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 (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채용 재공고 시에는 그 공고일 전까지 유효하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후 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내·외부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여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는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

지 별지 제18호를 확인해야 한다.

제24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담당관이나 그 부서 소속 직원 또는 감사담당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 절차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간제 관리 규정」 제9조(계약의 해지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 공고에 제1항의 부정 합격자의 합격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제19호에 따라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7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응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8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관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서 따로 별도 보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사후 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예시)

공무원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1. 채용 배경

- 결원이 발생한 분야(사무원·시설관리·운전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 공백 최소화
- 공개경쟁채용·제한경쟁채용으로 직무능력에 부합한 인력을 채용하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형평적 채용(저소득층 등) 병행

2.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3. 채용 개요

☐ 채용 분야·방법

채용분야	근무부서 (근무지)	선발예정 인원	채용 사유	채용방법	비고
공무직 (사무원)	○○과 (◇◇동)	1	퇴직(00.00.00.) 결원 충원	공개경쟁채용	변경 공고*
기간제 (시설관리)	●●소 (◆◆동)	1	육아휴직(00.00.00~00.00.00.) 대체 인력 충원	제한경쟁채용 (자격증·경력)	
기간제 (운전원)	◎◎팀 (□□리)	1	질병휴직(00.00.00~00.00.00.) 대체 인력 충원	제한경쟁채용 (사회형평-장애)	9개월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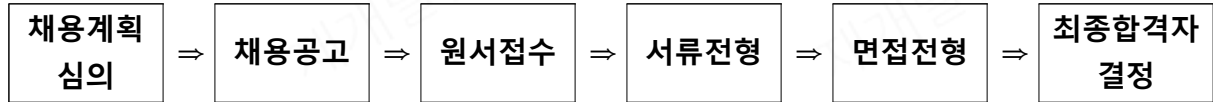
* (예시) 최초 공고(00.00.00. 공고)·재공고(00.00.00. 공고) 시 제한경쟁채용으로 실시하였으나 2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미달하여 공개경쟁채용으로 변경 공고 결정(00.00.00. 인사위 의결 사항)

☐ 채용 분야 근로조건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공무직 (사무원)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보수 기재
기간제 (시설관리)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기간제 (운전원)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4. 채용 절차 및 추진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만 실시하는 채용 시(필기시험 등 별도전형 추가 시 반영 필요)



- 채용계획 인사위 상정 및 심의·의결: '00.00.00.(O) ~ '00.00.00.(O)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 이행
- 채용공고: '00.00.00.(O) ~ '00.00.00.(O)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소 7일 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준수
 -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에 공고
- 원서접수 : '00.00.00.(O) ~ 00.00.00.(O) * 최소 3일 이상 접수 기간 설정
 - ※ 우편접수(주소 명기), 전자우편 접수(000@mapo.go.kr) * 둘 이상의 방법으로 접수
 - 채용절차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라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노력
- 서류전형 : '00.00.00.(O) ~ '00.00.00.(O)
 - ※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안)은 원서접수 완료 후 진행 및 별도 보고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0.00.00.(O)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등 홈페이지 게시
 - 채용절차법 제13조(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한정 증빙자료 제출 노력
- 면접전형 : '00.00.00.(O)
 - ※ 면접전형 심사위원 구성(안)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진행 및 별도 보고 예정
- 최종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00.00.00.(O) ~ '00.00.00.(O)
 - ※ 응시자격·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우대사항 등 확인
- (필요 시) 채용점검위원회 실시 : '00.00.00.(O)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채용에 대한 채용 점검위원회 실시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00.00.00.(O)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 등 홈페이지 게시
- 채용 예정자 관련 서류 접수 : '00.00.00.(O) ~ '00.00.00.(O)
 - ※ 채용 예정자 신원조사(조회), 결격사유, 경력조회, 취업제한 여부 등
- 채용 예정일 : '00.00.00.(O)
 - ※ 상기 일정은 사전협의 기간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00세 이상인 자로(00.00.00. 이전 출생자) 공고일(00.00.00.)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0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 등 반영

< 채용결격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응시자격 기준표> 반영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 (사무원)	- (응시자격) 공통 자격 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기간제 (시설관리)	- (응시자격)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반영
기간제 (운전원)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인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반영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0000.00.00.예정)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채용시험 가점기준> 반영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	

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 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6. 시험방법

채용분야	서류전형(선발 배수)													
공무직 (사무원)	○ 적극적 서류전형(10배수)													
	<table><tr><th rowspan="2">계</th><th colspan="3">평가점수</th><th rowspan="2">가점 (사회형평)</th></tr><tr><th>지원분야 경력</th><th>자기소개 서</th><th>우대사항 (자격증)</th></tr><tr><td>100점 + 가점</td><td>50</td><td>35</td><td>15</td><td>3</td></tr></table>	계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 서	우대사항 (자격증)	100점 + 가점	50	35	15	3
	계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 서	우대사항 (자격증)											
100점 + 가점	50	35	15	3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기간제 (시설관리)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기간제 (운전원)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채용분야별 시험방법이 상이할 경우 상단의 표와 같이 구분 필요(동일한 경우 해당없음)

□ 서류전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서류전형) 반영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소극적 서류전형(적격여부만 판단)을 실시하는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정량·정성평가) 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공무직(사무원)의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임에 따라 10배수(10명)으로 면접전형 대상자 결정 예정
-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항

□ 면접전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면접전형) 반영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면접전형)제1항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항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7. 심사위원 위촉

채용분야	서류전형	면접전형	비고
공무직 (사무원)	3인(내부 2인·외부 1인)	4인(내부 2인·외부 2인)	-
기간제 (시설관리) *9개월 이상 근무	2인(내부 2인)	3인(내부 2인·외부 1인)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기간제 (운전원) *9개월 미만 근무	2인(내부 2인)	3인(내부 3인)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 구성 비율 (1/3 이상) 준수
- 기간제(시설관리·운전원)은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에 따른 서류전형 내부위원 구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극적 서류전형에 대한 내부위원 구성
- 기간제(운전원)은 계약기간 6개월 이하에 따른 채용으로, 면접전형 모두 내부위원 구성 → 9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내부위원 구성

- 구체적인 전형위원 구성(안) 별도 보고 예정
 - 서류전형 : 원서접수 완료 이후 심사위원 확정 예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심사위원 확정 예정
- ※ 지원자 중 내부 직원이 있을 경우,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예시: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 구성)
- 심사위원 구성 전 제척 대상 여부 검토 및 전형일 당시 심사위원 회피의무 안내 및 서약서 징구·사전교육 실시를 통한 채용 공정성 강화
- 심사위원 회피·기피 상황 발생 시 평가는 아래와 같이 진행
 - (나머지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회피(기피) 심사위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 부여
 - ※ 해당 응시자 평가 후 다음 응시자부터는 심사위원이 다시 평가에 참여
 - (나머지 심사위원이 1명 이하인 경우) 사전에 예비 심사위원을 확보하고, 회피(기피) 심사위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예비 심사위원이 평가 실시
 - ※ 해당 응시자 평가 후 다음 응시자부터 당초 심사위원이 평가 실시(단, 회피(기피) 해당 응시자가 최초 응시자일 경우 예비 심사위원이 계속 평가 시행 가능)

8.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비고
공무직 (사무원)	1명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기간제 (시설관리)	1명	3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예비합격자 배수 확대*
기간제 (운전원)	1명	3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예비합격자 배수 확대* 계약기간 6개월 이하

* (예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잦은 임용포기·퇴직으로 인한 미채용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3배수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항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3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3항
-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는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임용포기로 인한 미채용에 대비하여 2배수까지 운영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 기간제(운전원)의 경우는 근무 기간이 9개월 미만임에 따라 예비합격자 운영기한을 3개월로 단축

붙임: 1. 채용공고문(안) 1부.

2. 전형별 심사기준표 및 시험 채점표 등 각 1부. 끝.

<별지 제2호>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예시)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0000-0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1. 채용 개요

연번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1	공무직 (사무원)	1명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OO과 (◇◇동)
2	기간제 (시설관리)	1명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소 (◆◆동)
3	기간제 (운전원)	1명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팀 (□□리)

-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연번 2,3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 채용 분야(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연번 2, 3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00세 이상인 자로(00.00.00. 이전 출생자) 공고일(00.00.00.)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0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 (사무원)	- (응시자격) 공통 자격 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기간제 (시설관리)	- (응시자격)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인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기간제 (운전원)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인 자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0000.00.00.예정) 기준으로 판단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 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00.00.00(O)~ 00.00.00(O)		00.00.00(O)~ 00.00.00(O)		(발표일) 00.00.00(O)		(발표일) 00.00.00(O)		(발표일) 00.00.00(O)

○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공무직 (사무원)	○ 적극적 서류전형(10배수)				
	계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자격증)	
	100점 + 가점	50	35	15	3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 10명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00.00.00(O) 홈페이지 공고				
기간제 (시설관리)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기간제 (운전원)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00.00.00(O)				

○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공무직 (사무원)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기간제 (시설관리)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기간제 (운전원)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공무직(사무원)	1명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기간제(시설관리)	1명	3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기간제(운전원)	1명	3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00.00.00.(O) 09:00~ 00.00.00.(O) 18:00	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 워크넷 등
원서접수 기간	00.00.00.(O) 09:00~ 00.00.00.(O) 18:00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00.00.00.(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00.00.00.(O)	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없음)
면접전형	00.00.00.(O)	
최종합격자 발표일	00.00.00.(O)	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없음)
채용 예정일	00.00.00.(O)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00부·00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00.00.00.(O) 09:00~ 00.00.00.(O) 18:00

○ 원서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편주소)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OOOOO@mapo.go.kr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입사지원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공고 상 불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합격자 전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공통	가점 대상자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③ 자격가점 대상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공무직 (사무원)	우대사항 대상자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기간제 (시설관리)	합격자 전원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기간제 (운전원)	합격자 전원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 분야	계약기간	근무지	근무시간	보수
공무직 (사무원)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과 (◇◇동)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보수 기재
기간제 (시설관리)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소 (◆◆동)		
기간제 (운전원)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팀 (□□리)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마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마포구 공무직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에 관한 규정」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치,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00.00.00.()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마포구 000과 주무관 000 (02-3153-0000)에게 문의

- 붙임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끝.

<별지 제3호> 근로자 입사지원서 (예시)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접수번호	< 미기재 >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		
	(비상연락처)	우편		
생일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생년은 미기재			
주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지원 자격 여부	(채용계획에서 정한 지원분야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지원분야 1>, ☐ <지원분야 2>, ☐ <지원분야 3>			
우대 사항 여부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우대사항 1>, ☐ <우대사항 2>, ☐ <우대사항 3>			
가점 사항 여부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5% ☐ 10%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2. 응시자격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3. 우대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한국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XX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심사위원 서약서(예시)

관련문서	○○○○과-0000호		
채용구분	[]공무직 []기간제	전형구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서 약 서

본인은 0000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00부(00시)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으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기피·회피사유서(예시)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 채용부서 :
- ☐ 채용분야 :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응시자격 기준표(예시)

☐ 자격증·경력을 요하는 제한경쟁채용(예시)

구분	자격기준
시설관리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원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조리사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조리”의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사무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사회형평적 인력운용을 위한 제한경쟁채용(예시)

구분	자격기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문화가족

<별지 제7호>서류심사 채점표(예시)

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채점표

계약형태	공무직/기간제	직 중		응시 번호	
성 명					
필수요건 구비여부	○ 제출서류 구비 및 양식 준수 여부			여 / 부	
	○ 응시자격요건 부합여부			여 / 부	
구 분	세부기준	배 점	평가점수		
지원분야 경력 (30점)	◦ 경력없음 ~ 1년 미만	10			
	◦ 1년이상 ~ 2년미만	20			
	◦ 2년이상	30			
지원분야 자격증 (10점)	◦ 산업기사, 기능사 등	5			
	◦ 기술사, 기사 등	10			
지원분야 적합성 (60점)	◦ 소통·화합 능력 ◦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능력 ◦ 추진력, 업무성취 경험 ◦ 성실성·책임감 ◦ 지원동기, 청에대한 이해	60			
계 (100점)					
감점	◦ 블라인드 채용 위반 (학력, 출신지, 성명 등 기재)	-10			
	◦ 관련 양식 미준수 제출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 따름(세부기준)	5, 10			
합계					
특이사항	*				
채점일	20 . . .	채점자	직 급		
			성 명	(서명)	

<별지 제8호> 서류심사 집계표(예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집계표☐ 근무부서 :☐ 모집단위 :☐ 채용인원 : 명 (응시인원 명)

응시 번호	성 명	자격요건 구비여부	채점결과		합계	평균	순위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시험 위원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별지 제9호> 면접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예시)

면접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공통)

- 응시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언급 시 발언 제지
- * 친·인척 중 유명 인사나 고위직이 있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행위
- * 시험에 탈락한 경험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위

- 응시자에 따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삼가
- *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력(학위소지), 출신지역, 병역, 결혼여부 등

- 정치적인 견해나 태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함

- 응시자를 무시하거나 권위적·고압적인 발언 등으로 품위를 잃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주의

- 면접시간 중 화장실 출입, 휴대전화 사용, 졸음 등은 수험생 주요민원 제기 요인이므로 유의

- * 시험보안관계상 중식시간 등 시험실을 비우는 시간대는 일체의 면접 관련 서류를 심사위원 회의장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람
- * 면접종료 후에는 모든 면접자료를 시험시행본부에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10호> 면접 표준질문서(예시)

구분	중점평가항목	질문 및 검토사항 예시
1. 공무원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직업의식 - 청렴성 - 우리 기관에 대한 기대 - 근무지속성	- OOOO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 1분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 평소 공무원근로자에 대한 이미지는? - 자신이 공직에 와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OOO소속 공무원의 자세는? - OOOO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고, 평소 가졌던 생각은? - 지금까지의 좋은 직장을 그만둘 정도의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전공에 필요한 전문지식 - 교양지식	- 본인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전문분야 및 특징은? - 본인이 가장 내세울 만한 업무실적은? 그 이유는? - 예정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 또는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 - 관련 영역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 선발 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싶은 업무는? 그 분야에 대해 남들과 차별화된 전문성은?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의 전개방식 - 핵심의 접근방법	- 자기소개 또는 3분 스피치 후 평가 - 발표 내용의 논리정연성 판단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성실도 - 복장 - 자세	- 지금까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본인이 지금까지 한 일중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유는? -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게 있다면? - 단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 가장 싫어하는 사람 유형은 무엇인가요?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와 의견충돌이 있다면?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미래지향성 - 진취성 - 대인관계	-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 지금까지 성과를 얻은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본인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상급자가 본인을 신뢰하고 자주 일을 맡긴다. 반면 다른 동료는 일을 제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상급자가 본인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지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 -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일을 처리한 경험은? - 봉급이 박봉인데 생활할 수 있나요? - 장래에 대한 계획 및 포부는?

<별지 제11호> 면접시험 평정표(예시)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본인은 아래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채용직종	
	본인필적	응시부서	○○○○과
성 명		수험번호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평정점수	평가등급		
		상(10점)	중(6점)	하(2점)
가. 공무원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10점)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10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점 수 합 계				
위 원 서 명	성명	(서명)		

※ 유의사항

- 합격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별지 제12호> 면접시험 집계표(예시)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

응시분야	공무직 (○○○○○○)	채용예정기관	○○○○○
------	-----------------	--------	-------

수험 번호	성 명	심사위원 점수						가· 감점	총계	순위
		1위원	2위원	3위원	합계	평균	합·불			

시험 위원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별지 제13호> 면접시험 결정서(예시)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결정서

공무직/기간제 (○○○○○) 면접시험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격자 및 추가합격 대상자 순위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함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 합격자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2				
3				
4				

20 년 월 일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채용시험 가점기준(예시)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지 제15호>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예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16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예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0000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시,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17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표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예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에 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일일일

<별지 제19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표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 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 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 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158호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7호(2022.9.8.)로 정비구역 변경된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I.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특별계획구역4 (신촌마포2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57-1번지 일대	9,502.0	-	9,502.0	

※ 특별계획구역4(신촌마포2구역) 외 기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4 (신촌마포2구역)		비 고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 축 물 용 도	권장 용도	주거, 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시설 중 학원		세부개발 계획 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허 용도	양화로변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전층
		양화로변외 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일반숙박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 800%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최고높이		10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사항은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한하여 적용함

II.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명 칭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	1,874.3	-	1,87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 (2014.08.28.)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비 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874.3	-	1,874.3	100.0	-
획 지	1,874.3	-	1,874.3	100.0	-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74.3	-	1,874.3	100.0	
일반상업지역	1,874.3	-	1,874.3	100.0	

4.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46	노고산동 57-4	노고산동 57-59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1964.7.8.)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8	노고산동 57-45	노고산동 57-12	보행자 우선도로	-	서고 2011-286호 (2011.9.29)	

5. 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변경)

구분		면적(m ²)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m ²)			건축물 제공	순부담 비율(%)	비고
		시행	획지	계	도로	문화시설 ¹			
신촌지역(마포) 2-7지구	기정	1,874.3	1,874.3	-	-	-	272.8	14.5%	-
	변경	1,874.3	1,874.3	-	-	-	315.6	16.8%	증) 42.8m ²

※ 도입시설(지분 및 건축물) 중 어린이집은 마포구로 귀속되며 마포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하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기부채납 면적 : 103.1m²(토지지분 : 30.5m², 환산부지 : 72.6m²)[연면적:373.33m²],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기부채납 면적 : 212.5m²(토지지분 : 67.1m², 환산부지 : 145.4m²)[연면적:820.08m²]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 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 기정) 272.8m ² - 변경) 315.6m ² [증) 42.8m ²]	· 공공기여시설(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설) 위치 및 연면적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 변경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9,502.0	2-7	1,874.3	노고산동 57-20 일대	13	-	-	13	-	-
변경	재개발구역					12	-	-	12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 기존 건축물 동수 감소 - 기정) 13동 - 변경) 12동 [감) 1동]	· 기존 건축물 현황[단독주택 1동(1세대) 멸실(2022년 9월 8일 등기 폐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8.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m²)	명칭	면적(m²)																																																																																																																																								
기정	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9,502	2-7	1,874.3	노고산동 57-20 일대	주거	60 이하	기준 600 이하 허용 797.4 이하 상한 948.26 이하	1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71호)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로 확보 - 건립규모 및 비율 <table><thead><tr><th colspan="4" rowspan="2">구분</th><th colspan="4">세대수(세대)</th><th rowspan="2">비율 (%)</th></tr><tr><th colspan="2">기정</th><th colspan="2">변경</th></tr></thead><tbody><tr><td rowspan="8">공동 주택</td><td colspan="2" rowspan="3">일반분양</td><td colspan="2">40㎡ 이하</td><td>-</td><td></td><td>17</td><td rowspan="3">140</td><td>8.7 (9.0)</td></tr><tr><td colspan="2">40㎡ 초과 ~ 60㎡ 이하</td><td>114</td><td>141</td><td>101</td><td>51.5 (53.5)</td></tr><tr><td colspan="2">60㎡ 초과 ~ 85㎡ 이하</td><td>27</td><td></td><td>22</td><td>11.2 (11.6)</td></tr><tr><td rowspan="2">공공주택</td><td rowspan="2">장기일반 민간임대</td><td colspan="2">40㎡ 이하</td><td>29</td><td rowspan="2">48</td><td>28</td><td rowspan="2">49</td><td>14.3 (14.8)</td></tr><tr><td colspan="2">40㎡ 초과 ~ 60㎡ 이하</td><td>19</td><td>21</td><td>10.7 (11.1)</td></tr><tr><td colspan="2">소계</td><td colspan="2">-</td><td colspan="2">189</td><td colspan="2">189</td><td>96.4 (100.0)</td></tr><tr><td colspan="2">오피스텔</td><td colspan="2">60㎡ 초과 ~ 85㎡ 이하</td><td colspan="2">7</td><td colspan="2">7</td><td>3.6</td></tr><tr><td colspan="4">합 계</td><td colspan="2">196</td><td colspan="2">196</td><td>100.0</td></tr></tbody></table> ※ ()는 공동주택 세대수(189세대) 기준 비율임 - 용적률 : ①(600%) + ②(197.4%) + ③(150.86%) = 948.26%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197.4% 적용 <table><thead><tr><th>구분</th><th>목표</th><th>인센티브 대상</th><th colspan="2">기준</th><th colspan="2">적용(안)</th></tr></thead><tbody><tr><td rowspan="3">의무</td><td rowspan="3">친환경 개발</td><td>녹색건축물 인증</td><td rowspan="3">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½ 부여</td><td rowspan="3">최대 100%</td><td rowspan="3">100%</td><td rowspan="3">197.4%</td></tr><tr><td>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td></tr><tr><td>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td></tr><tr><td rowspan="3">계획 유도</td><td>생활 SOC</td><td>도서관, 청소년야동시설, 일자리창출공간 등</td><td>정률부여(0.2)</td><td>최대 50%</td><td>37.4%</td><td rowspan="3"></td></tr><tr><td>보행가로 활성화</td><td>무장애도시조성</td><td>정량부여(30%)</td><td>최대 50%</td><td>30%</td></tr><tr><td>안전·방재</td><td>방재관련시설</td><td>정량부여(30%)</td><td>최대 30%</td><td>30%</td></tr></tbody></table>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50.86% 적용 <table><thead><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공공 시설</th><th colspan="2">산식</th></tr><tr><th>산식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th><th></th></tr></thead><tbody><tr><td rowspan="2">공공 시설</td><td>1) 어린이집</td><td>산식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797.4% × (1.3 × 1 × 0.04583) = 47.5%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85.9 ÷ 1,874.3 = 0.04583</td><td></td></tr><tr><td>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td><td>산식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797.4% × (1.3 × 1 × 0.09971) = 103.36%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186.9 ÷ 1,874.3 = 0.09971</td><td></td></tr></tbody></table><table><thead><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r></thead><tbody><tr><td rowspan="2">기정</td><td colspan="2"> - 주거비율 90% 이하 (지상연면적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853.43% 이하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160.28% 계획 ※ [허용용적률 797.4% - 주거용적률 400% - 비주거 81.33%]의 ½이상 = 158.04% 이상 </td></tr><tr><td colspan="2"> - 주거비율 90% 이하 (지상연면적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853.43% 이하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161.97% 계획 ※ [허용용적률 797.4% - 주거용적률 400% - 비주거 80.14%]의 ½이상 = 158.63% 이상 </td></tr></tbody></table>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건축물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	기정		변경		공동 주택	일반분양		40㎡ 이하		-		17	140	8.7 (9.0)	40㎡ 초과 ~ 60㎡ 이하		114	141	101	51.5 (53.5)	60㎡ 초과 ~ 85㎡ 이하		27		22	11.2 (11.6)	공공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	40㎡ 이하		29	48	28	49	14.3 (14.8)	40㎡ 초과 ~ 60㎡ 이하		19	21	10.7 (11.1)	소계		-		189		189		96.4 (100.0)	오피스텔		60㎡ 초과 ~ 85㎡ 이하		7		7		3.6	합 계				196		196		100.0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기준		적용(안)		의무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½ 부여	최대 100%	100%	197.4%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계획 유도	생활 SOC	도서관, 청소년야동시설, 일자리창출공간 등	정률부여(0.2)	최대 50%	37.4%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조성	정량부여(30%)	최대 50%	30%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량부여(30%)	최대 30%	30%	구분	공공 시설	산식		산식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공공 시설	1) 어린이집	산식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797.4% × (1.3 × 1 × 0.04583) = 47.5%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85.9 ÷ 1,874.3 = 0.04583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산식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797.4% × (1.3 × 1 × 0.09971) = 103.36%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186.9 ÷ 1,874.3 = 0.09971		구분	기정	변경	기정	- 주거비율 90% 이하 (지상연면적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853.43% 이하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160.28% 계획 ※ [허용용적률 797.4% - 주거용적률 400% - 비주거 81.33%]의 ½이상 = 158.04% 이상		- 주거비율 90% 이하 (지상연면적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853.43% 이하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161.97% 계획 ※ [허용용적률 797.4% - 주거용적률 400% - 비주거 80.14%]의 ½이상 = 158.63% 이상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																																																																																																																																				
				기정		변경																																																																																																																																						
공동 주택	일반분양		40㎡ 이하		-		17	140	8.7 (9.0)																																																																																																																																			
			40㎡ 초과 ~ 60㎡ 이하		114	141	101		51.5 (53.5)																																																																																																																																			
			60㎡ 초과 ~ 85㎡ 이하		27		22		11.2 (11.6)																																																																																																																																			
	공공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	40㎡ 이하		29	48	28	49	14.3 (14.8)																																																																																																																																			
			40㎡ 초과 ~ 60㎡ 이하		19		21		10.7 (11.1)																																																																																																																																			
	소계		-		189		189		96.4 (100.0)																																																																																																																																			
	오피스텔		60㎡ 초과 ~ 85㎡ 이하		7		7		3.6																																																																																																																																			
	합 계				196		196		100.0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기준		적용(안)																																																																																																																																							
의무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½ 부여	최대 100%	100%	197.4%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계획 유도	생활 SOC	도서관, 청소년야동시설, 일자리창출공간 등	정률부여(0.2)	최대 50%	37.4%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조성	정량부여(30%)	최대 50%	30%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량부여(30%)	최대 30%	30%																																																																																																																																							
구분	공공 시설	산식																																																																																																																																										
		산식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공공 시설	1) 어린이집	산식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797.4% × (1.3 × 1 × 0.04583) = 47.5%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85.9 ÷ 1,874.3 = 0.04583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산식 = 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 = 797.4% × (1.3 × 1 × 0.09971) = 103.36%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186.9 ÷ 1,874.3 = 0.09971																																																																																																																																										
구분	기정	변경																																																																																																																																										
기정	- 주거비율 90% 이하 (지상연면적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853.43% 이하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160.28% 계획 ※ [허용용적률 797.4% - 주거용적률 400% - 비주거 81.33%]의 ½이상 = 158.04% 이상																																																																																																																																											
	- 주거비율 90% 이하 (지상연면적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853.43% 이하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161.97% 계획 ※ [허용용적률 797.4% - 주거용적률 400% - 비주거 80.14%]의 ½이상 = 158.63% 이상																																																																																																																																											

※ 공공기여량이 증가됨에 따라 상한용적률 완화량 증가하였으나, 기 결정된 상한용적률 체계 유지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 공동주택(일반분양) 세대수 변경 - 기정) 141세대 - 40㎡ 초과 60㎡ 이하 : 114세대 - 60㎡ 초과 85㎡ 이하 : 27세대 - 변경) 140세대 [감] 1세대] - 40㎡ 이하 : 17세대 [증] 17세대] - 40㎡ 초과 60㎡ 이하 : 101세대 [감] 13세대] - 60㎡ 초과 85㎡ 이하 : 22세대 [감] 5세대]	· 건축심의('23.4.11) 결과[복도폭 개선 및 세대 평면 조정 등]반영에 따른 평형별 세대수 일부 변경 (총 세대수 변경없음)	
	·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 세대수 변경 - 기정) 48세대 - 40㎡ 이하 : 29세대 - 40㎡ 초과 60㎡ 이하 : 19세대 - 변경) 49세대 [증] 1세대] - 40㎡ 이하 : 28세대 [감] 1세대] - 40㎡ 초과 60㎡ 이하 : 21세대 [증] 2세대]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계획 및 기준 변경 - 기정) 계획 : 160.28% (기준 : 158.04% 이상) - 변경) 계획 : 161.97% (기준 : 158.63% 이상) [증] 계획 1.69% (기준 0.59%)	· 건축심의('23.4.11) 결과[복도폭 개선 및 세대 평면 조정 등]반영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계획 변경	

9.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 현황 : 1세대 - 계획 : 189세대 (증 188세대)	-
변경				- 현황 : - - 계획 : 189세대 (증 189세대)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변경 - 기정) 188세대 (현황 : 1세대 / 계획 : 189세대) - 변경) 189세대 (현황 : - / 계획 : 189세대) [감] 현황 1세대]	· 기존 건축물 현황[단독주택 1동(1세대) 멸실(2022년 9월 8일 등기 폐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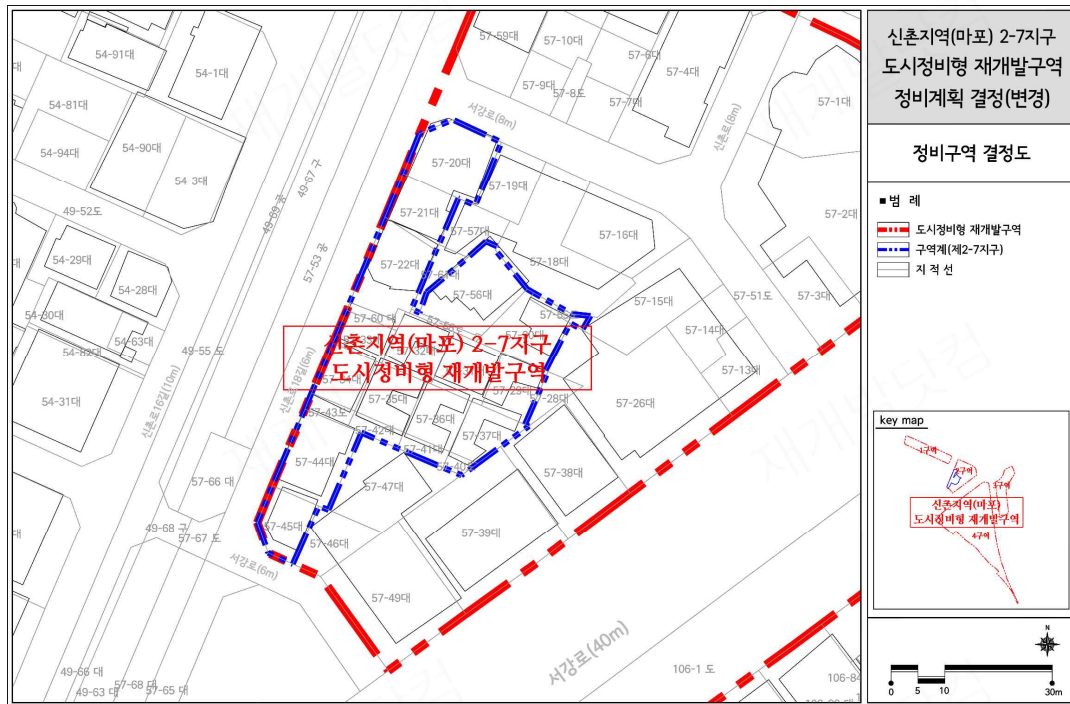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Ⅳ.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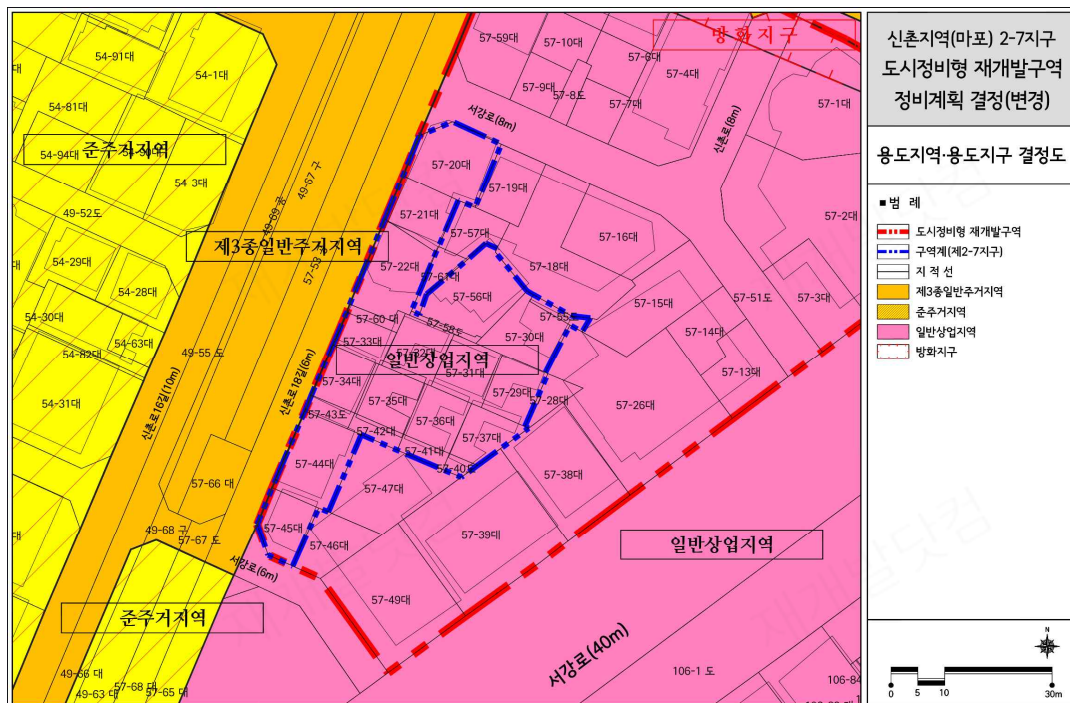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6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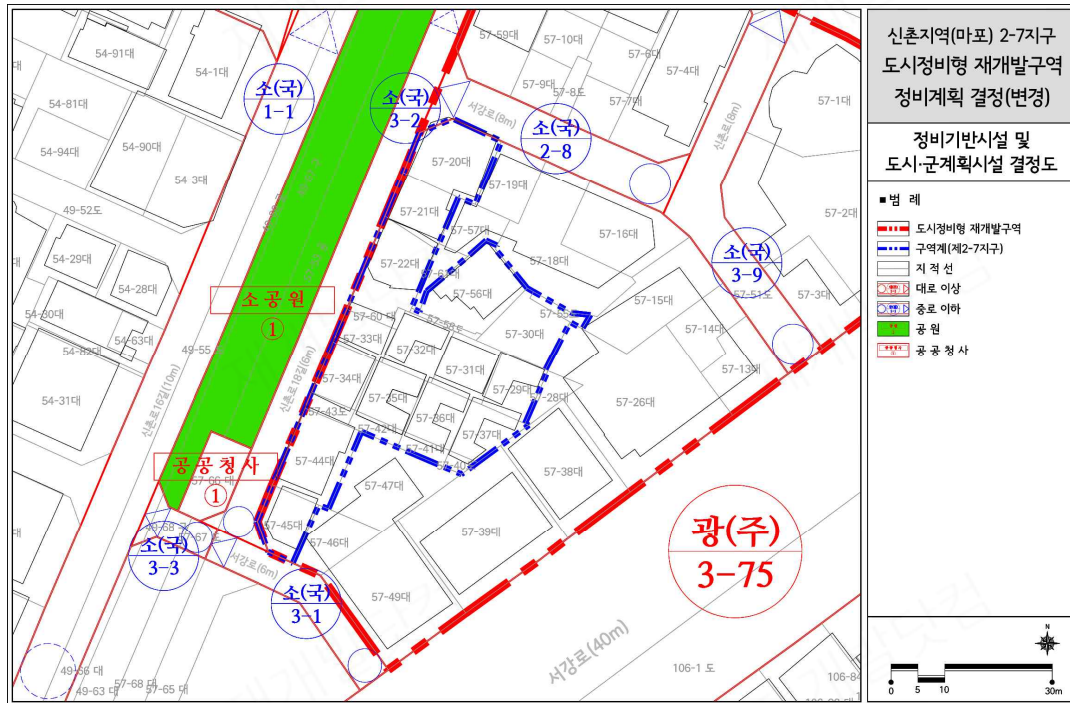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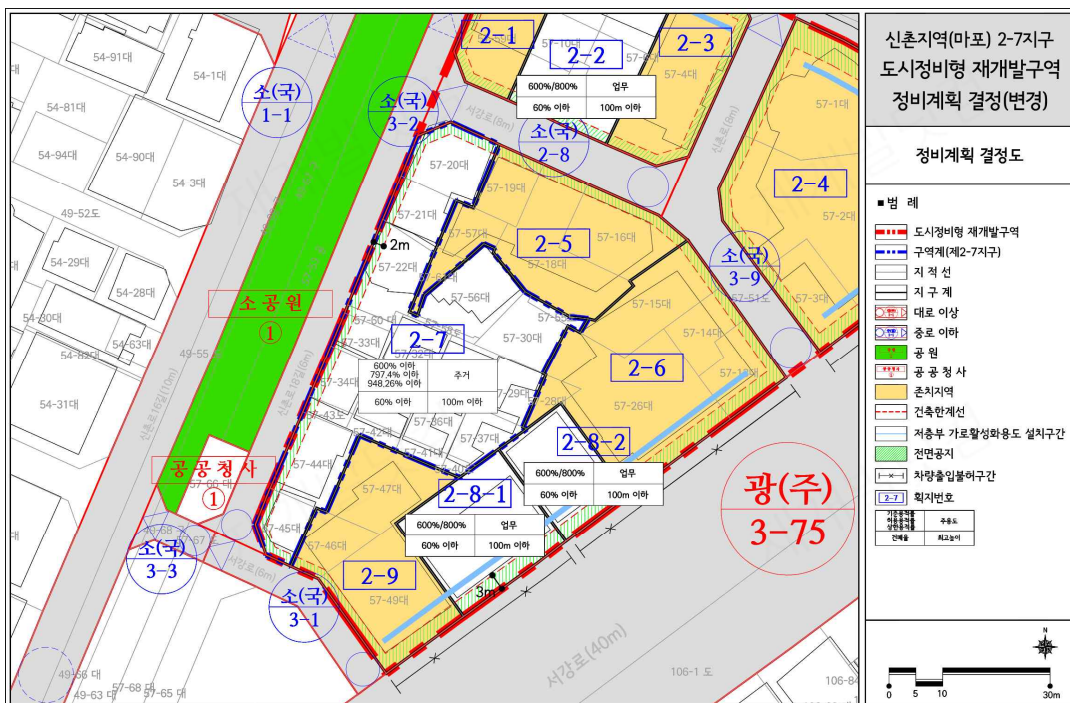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 - 1308호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304(2014.8.28.)호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1703호(2022.12.22.)로 정비계획(변경) 공람·공고하여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2023.06.21.)에서 수정가결된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합니다.
2. 본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공람기간 내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년 08 월 31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3. 08. 31. ~ 2023. 09. 30.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4)
3. 공람내용 :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가.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548,255.2	-	548,255.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14호 (2013.9.2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변경)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5구역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특별계획구역5 (신촌지역 마포4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52,583.6	-	52,583.6	-

※ 특별계획구역5(신촌지역 마포4구역) 외 기재 생략

(2) 특별계획구역5 계획지침 : 변경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비고
위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7-1번지 일대	(좌동)	-
면적		• 52,583.6㎡	(좌동)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12층)	(좌동)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좌동)	-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주거시설(준주거지역에 한함)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주거	세부개발계획 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로타리변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좌동)	전층
	로타리변 외 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일반숙박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구 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비 고
건폐율	60% 이하(경의공항선 지상부공원 주변 관리계획수립에 의해 건축행위 및 높이 등을 제한받는 획지에 한해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지침 준수시 건폐율 10% 완화(60%→70%))	(좌 동)	-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일반상업지역(간선부) : 600%이하/80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일반상업지역(이면부) : 500%이하/70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준주거지역 : 300%이하/36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25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20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좌 동)	-
최고높이	- 로터리일대 : 100m 이하 - 로터리변 제외한 상업지역 : 80m이하 - 주거지역 : 60m이하	(좌 동)	-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정비형재개발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사항은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한하여 적용함

나. 정비구역 지정

-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107-2 일대	1,749.5	증) 67.2	1,816.7	정비기반시설(소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부지) 지정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749.5	증) 67.2	1,816.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337.0	증) 67.2	404.2	22.2	-
	도로	121.5	-	121.5	6.7	-
	분담면적 (소공원)	215.5	증) 67.2	282.7	15.5	주차장 중복결정
획지	소계	1,412.5	-	1,412.5	77.8	-
	4-1지구	1,412.5	-	1,412.5	77.8	-

※ 상기면적은 사업시행 시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749.5	증) 67.2	1,816.7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증) 28.1	28.1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15.5	증) 39.1	254.6	14.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34.0	-	1,534.0	84.4	

※ 상기면적은 사업시행 시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3	12 (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6 (23)	노고산동 107-108	노고산동 107-12	-	대현토지 구획정리사업 (1964.07.08.)	-
기정	중로	3	4	12 (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8 (38)	노고산동 107-3	노고산동 107-13	-	대현토지 구획정리사업 (1964.07.08.)	-

※ ()는 4-1지구내 편입되는 폭원, 연장임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주차장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1,442.1 (282.7)	-	1,442.1 (282.7)	서울시고시 2014-304호 (2014.8.28)	소공원① 중복결정

※ ()는 4-1지구내 편입되는 면적임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공원	소공원	마포구 노고산동 117-1번지 일대	1,442.1 (282.7)	-	1,442.1 (282.7)	서울시고시 2014-304호 (2014.8.28)	주차장 중복결정

※ ()는 4-1지구내 편입되는 면적임

4)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역 마포	1,749.5	-	1,412.5	마포구 노고산동	6	-	-	6	-	-
변경	4-1지구	1,816.7	-	1,412.5	107-2 일대	8	-	-	8	-	

나)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1,749.5	-	1,412.5	마포구 노고산동	업무	60 이하	600/800/α	100 이하	-																																																																					
변경	4-1지구	1,816.7	-	1,412.5	107-2 일대	주거	60 이하	600/800/985.25 이하	1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1호)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확보 • 건립 규모 및 비율 <table><thead><tr><th colspan="2">구분</th><th>전용면적</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고</th></tr></thead><tbody><tr><td rowspan="6">공동주택</td><td rowspan="3">일반분양</td><td>소 계</td><td>118세대</td><td>80.3%</td><td>-</td></tr><tr><td>40㎡이하</td><td>33세대</td><td>22.5%</td><td>-</td></tr><tr><td>40㎡ 초과 60㎡이하</td><td>85세대</td><td>57.8%</td><td>-</td></tr><tr><td rowspan="3">공공임대주택</td><td>소 계</td><td>29세대</td><td>19.7%</td><td>-</td></tr><tr><td>40㎡이하</td><td>15세대</td><td>10.2%</td><td>-</td></tr><tr><td>40㎡ 초과 60㎡이하</td><td>14세대</td><td>9.5%</td><td>-</td></tr><tr><td colspan="2">합 계</td><td></td><td>147세대</td><td>100.0%</td><td>-</td></tr></tbody></table> • 용적률 : ①(600%) + ②(200%) + ③(185.25%) = 985.25%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00% 적용 <table><thead><tr><th>목적</th><th>인센티브 대상</th><th>요건</th><th colspan="2">인센티브량</th></tr></thead><tbody><tr><td rowspan="3">친환경 개발 (의무)</td><td>녹색건축물 인증</td><td>그린1등급(최우수)</td><td rowspan="2">100%</td><td rowspan="7">200% 적용</td></tr><tr><td>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td><td>240(kWh/㎡·y)미만</td></tr><tr><td>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td><td>11%이상(비주거), 7%이상(주거)</td><td>30%</td></tr><tr><td rowspan="2">보행가로 활성화</td><td>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td><td>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td><td>30%</td></tr><tr><td>무장애도시 조성</td><td>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 인증</td><td>20%</td></tr><tr><td>도시경제 활성화</td><td>지역별 경제활성화정책 유도 용도</td><td>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도입시</td><td>20%</td></tr><tr><td>안전·방재</td><td>방재 관련시설</td><td>재생관리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td><td>30%</td></tr></tbody></table> ③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량 : 185.25% ■ 산식 = 기준(허용)용적률 × [(1.3 × 가중치 × α토지) + (1.3 × α건축물)] = 800% × [(1.3 × 0.47545 × 0.28616) + (1.3 × 0.04207)] = 185.25% 가중치 = $\frac{[(121.5\text{㎡}(\text{도로}) \times 800\%) + (282.7\text{㎡}(\text{소공원1}) \times 200\%)]}{(404.2\text{㎡} \times 800\%)} = 0.47545$ α토지 = $\frac{404.2\text{㎡}(\text{토지제공면적})}{1412.5\text{㎡}(\text{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0.28616$ α건축물 = $\frac{59.43\text{㎡}(\text{건축물 환산부지면적})}{1412.5\text{㎡}(\text{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0.04207$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공동주택	일반분양	소 계	118세대	80.3%	-	40㎡이하	33세대	22.5%	-	40㎡ 초과 60㎡이하	85세대	57.8%	-	공공임대주택	소 계	29세대	19.7%	-	40㎡이하	15세대	10.2%	-	40㎡ 초과 60㎡이하	14세대	9.5%	-	합 계			147세대	100.0%	-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100%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비주거), 7%이상(주거)	3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30%	무장애도시 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 인증	2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경제활성화정책 유도 용도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도입시	2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30%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공동주택	일반분양	소 계	118세대	80.3%	-																																																																										
		40㎡이하	33세대	22.5%	-																																																																										
		40㎡ 초과 60㎡이하	85세대	57.8%	-																																																																										
	공공임대주택	소 계	29세대	19.7%	-																																																																										
		40㎡이하	15세대	10.2%	-																																																																										
		40㎡ 초과 60㎡이하	14세대	9.5%	-																																																																										
합 계			147세대	100.0%	-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100%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비주거), 7%이상(주거)	3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30%																																																																												
	무장애도시 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 인증	2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경제활성화정책 유도 용도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도입시	2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30%																																																																												

심의 완화사항	• 공공주택 공급계획		
	주거비율	용적률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주거비율) = 400%]} ÷ 2 = {800% - {(800% × 14.3386%) + 400%}} ÷ 2 = 용적률 142.645% 이상(146.37% 계획)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면적	• 확보 기준 용적률 × 획지면적 = 142.645% × 1,412.5㎡ = 지상 연면적 2,014.86㎡ 이상(2,067.46㎡ 계획)
		세대수	• 확보 계획 지상 연면적(공급면적) ÷ 공공주택 공급면적(39형, 49형) = 36형(914.22㎡ ÷ 60.9482㎡) + 49형(1,153.24㎡ ÷ 82.3740㎡) = 36형(15세대) + 49형(14세대) = 29세대
※ 주택 전체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으로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확보 대상이 아님			
• 주거비율 : 87.17% 이하(전체연면적 기준), 85.66% 이하(전체용적률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843.97%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한계선 - 신촌로변 5m, 서강로·백범로변 3m, 이면부 2m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저층부 가로 활성화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 - 신촌로변, 서강로변, 백범로변	
	지정 용도 (신설)	• 지상2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직업훈련소 - 청년창업지원시설 면적 : 192.6㎡	

※ 청년창업지원시설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추후 건축심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도시경제활성화 20%)를 충족하기 위해 최소 188.4㎡ 이상 확보해야함

5) 기반시설 제공계획

가)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분	지구명	시행 면적 (㎡)	획지 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주차장 환산부지 (㎡)	순부담 합계(㎡)	순부담 비율 (%)	비 고
				계	도로	분담면적 (소공원)				
기정	4-1	1,749.5	1,412.5	337	121.5	215.5	27.8	364.8	20.6 이상	-
변경	4-1	1,816.7	1,412.5	404.2	121.5	282.7	59.43	463.63	25.52	-

※ 주차장의 경우 신촌지역 마포4-1지구에서 건축물 기부채납하여 조성 예정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주차장의 면적·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	증) 147세대	147세대	-

4. 관계도서 : 생략(기타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 상징물



• 구의 휘장

마포가 지닌 다양한 특징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다채로움이 공존하며 도시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 구의 꽃 : 목련 꽃

잎이 나기 전 목련나무에 피는 꽃이며, 향기가 진하고 색깔은 흰색이다. 꽃잎은 6개이고, 밑부분은 연한 홍색으로 청초한 인상을 준다.



• 구의 나무 : 단풍나무

잎이 붉고 아름다우며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여 도심의 가로수나 공원수로 좋다.



• 구의 새 : 청둥오리

물오리로 마포의 밤섬에 많이 서식하는 겨울철새이다. 목이 짧고 부리는 평평하며 깃털은 수컷이 더 아름답다.



• 구의 색 : 초록색

안전을 상징하며 평화, 지성, 소박함을 뜻한다.